**영국 공공기소국**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Crime report 2015-16**

**옮긴 이: 이불쟁이(DSO)**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이 글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복제·배포·공중송신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 전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p. 6

**스토킹과 성희롱**

(해당 스토킹 및 성희롱 데이터는 범죄 기반 데이터 시스템에서만 이용 가능한 관계로 경찰의 위탁이나 기소 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 2015-16년, 성희롱 및 스토킹 범죄 12,986건의 기소가 진행되었다. 2014-15년의 12,122건에 비해 864건(7.1%) 증가했으며 이번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기소가 시작된 모든 성희롱 및 스토킹 범죄 가운데 9,077(69.9%)건은 가정폭력(DA, Domestic Abuse)과 관계된 것이었다. 지난 해 가정폭력 관련 사건은 8,230으로 올해는 847건(10.3%)가 증가했으며 이번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신종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것은 1,102건이며 이는 2014-15년의 1,103건과 비슷하다.
* 특히 스토킹 범죄 가운데 745건은 가정폭력과 관계된 기소였다.
*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15,384건에 달했으며 이는 2014-15년의 13,559건보다 13.5% 증가했으며 이번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5.7%는 가정폭력과 관계된 것이었다.
* 추행금지명령(non-molestations orders) 위반 6,672건에 대한 기소가 시작되었으며, 지난 해의 7,013건과 비교했을 때 4.9% 하락했다. 93.6%는 가정폭력과 관계된 것이었다.
* 2015년 법무부의 접근금지명령과 스토킹, 성희롱,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기소 자료는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VAWG) 자료 부록 2에 나와 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스토킹의 경우 유죄판결이 더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A항에서 폭력, 심각한 불안 혹은 두려움의 공포를 동반한 스토킹과 2A항의 공포, 불안, 두려움을 동반한 스토킹을 비교해보면 그를 알 수 있다.
* 2015년 7월 이해당사자 회의가 개최된 후, 활동가 그룹이 만들어졌다. 검사에게 제공되는 스토킹 관련 교육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간 사법 시스템 전문가, 제3부문 기관 대표들이 그룹에 포함되었다. 이 교육은 2016-17년 후반에 진행될 예정이다.

p. 10

**아동 학대**

* 경찰로부터 위탁 받은 아동 학대 건수는 2014-15년의 12,840건에서 2015-16년 13,282건으로 3.4% 증가했다.
* (위의 위탁 건수 가운데 66.9%인) 8,889건이 기소되었고, 이는 2014-15년보다 193건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고치이다.
* 2015-16년 완료된 기소 건수는 11,130건에 달했고 2014-15년보다 1,085(10.8%)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성별이 기록된 피고들 가운데 89.6%는 남성, 10.4%는 여성이었다.
* 아동 학대 사건들 가운데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 건수는 증가했으며 2014-15년에는 7,469건이었지만 2015-16년에는 8,439건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며 13%가 증가한 것이다.
* 2015-16년에는 아동 학대 살인 범죄에 대한 41건의 기소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75.6%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15년에는 17건의 기소를 기록했다.
* 아동 학대 상해 범죄 건수도 3,192건에서 3,582건으로 증가했다. 2014-15년과 비교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도 71.3%에서 72.8%로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 아동 성적 학대(Child Sexual Abuse, CSA) 범죄 관련 완료된 기소는 5,387건에서 2015-16년에 6,217건으로 증가했다. 830건(15.4%)이 증가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 아동 성적 학대 기소 가운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것은 3,975건에서 4,643건으로 (16.8%) 증가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이다. 유죄 판결 비율도 2014-15년에는 73.8%였지만 2015-16년에는 74.7%로 증가했다.
* 공공기소국은 내무부가 주도하는 정부간 아동 성폭력 대응 전략에서 지속적으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p. 11

**포르노그라피와 음란물**

* 2015-16년, 아동 학대 이미지 범죄에 관한 기소는 2014-15년 21,580건에서 22,545건으로 (4.5%) 증가했다. 이 결과에는 사진을 통한 아동 성적 착취 범죄 16,672건(기소가 시작된 것)이 포함된다.
* 기소된 음란물 범죄는 5,782건에서 2015-16년 6,940건으로 20% 증가했다.
* 강간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세 건의 기소가 있었고 합의 되지 않은 개인의 성적 이미지(소위 리벤지 포르노)를 공개하는 범죄에 대한 206건의 기소가 시작되었다.
* 공공기소국, 경찰과 사법부는 저위험 범죄자들의 온라인 음란 이미지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2016년 합동하여 새로운 접근을 채택했으며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정된 법률 지침이 2016년 7월에 발행되었다.
* 본 보고서의 VAWG 자료 부록에 포함된 사례 연구는 취약한 피해자들에 대한 착취, 강간 포르노와 합의 없는 개인의 성적 이미지 공개 범죄에 대한 기소를 다루고 있다.

p. 21

**소셜 미디어**

공공기소국은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신종 범죄를 구체화하고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다루기는 검사들에게 자세한 도움말 및 정확한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중략)

공공기소국은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행” 범죄 관련 신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지에 대한 안건을 포함하여 소셜 미디어 지침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6년 3월 공공 협의를 시작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강제, 성적인 동기를 가지거나 다른 형태의 사람간 범죄와 관련하여 새로운 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하고 강제, 위협하기 위한 인터넷,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메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스파이웨어(spyware), GPS 추적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제안된 새로운 조항은 검사들에게 사이버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를 경고한다. 나아가, 합의 없이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공개하고 통제 혹은 강제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발행되었다. 이 범죄들은 최초의 지침이 발행된 이후 생겨난 것들이다. 또한 공공기소국은 검사들에게 강간 혹은 폭행에서 사디스트적 행위의 대상이 되어 매우 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사진이 포함된, 극도로 모욕적인 대화(communications)의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동향을 경고했다.

지침에는 위조되거나 해를 가하는 정보와 함께 피해자의 이름으로 가짜 온라인 프로파일이나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고가 추가되었다. 협의는 2016년 5월 종료되었으며 최종 지침은 2016년 9월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
| --- |
| **그루밍과 소셜 미디어**  한 경찰이 어리고 취약한 소녀들을 구했고(groomed), 친구와 그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에게 접근했으며 성접대의 대가로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돈을 지불했다. 배심원단에게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그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근했던 소녀들은 17-26세였다.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며 8년간 감찰을 받게 될 것이다. |

p. 75

**아동 학대**

* 공공기소국은 “아동의 음란 이미지”(Indecent Images of Children, IIOC)를 기소할 때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경찰 및 원로 법조인과 협업하고 있다. 업데이트된 검찰 지침은 2016년 7월에 발표되었다.

|  |
| --- |
| 책임자(신뢰 받는 지위 position of trust)의 학대  한 의사가 25개의 범죄를 시인했고 이 안에는 성폭행, 관음, 16,000장이 넘는 음란 사진을 소유한 것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혈우병, 백혈병을 포함한 다른 심각한 병을 앓는 이들도 있었다. 그는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도중 18명의 소년을 강간(abusing)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16년 징역을 선고 받았고, 평생 성범죄자에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 방지 대상이 되었다. |

**입법**

공공기소국은 성인과 아동이 성적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불법화하기 위한 입법 도입을 지원하며 해당 범죄로 인해 중죄법안 수정을 제안하기 전에 앞서 아동보호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아동과의 성적 대화(communications)’에 대한 범죄는 2015년 3월 3일 국왕의 재가를 받았지만, 본 보고서가 발행될 때에도 개시날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p. 75

|  |
| --- |
| **그루밍**  세 명의 남성이 14-17세의 10대 다섯 명을 식당과 근처의 호텔에 데려가려 했던 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식당에서 이 세 명의 남자로부터 성희롱과 그루밍을 당했다. 근처의 호텔에서, 가해자들은 술, 대마, 담배를 권유했으며 성폭행 전에는 돈을 권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문 사진가인척 위장하여 피해자들(소녀들)에게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면 그들을 모델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찍는 동안 심각하고 지속적인 성폭행을 자행했다. 그들은 총 2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p. 77

|  |
| --- |
| **간병인에 의한 학대**  한 간병인이 13세 미만 아동 5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강간 범죄 두 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열 세건의 성폭행,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 사진과 관련된 스물 네 개의 범죄에 대해 5년간 감찰과 함께 총 10년 징역형을 받았다.  한 위탁 간병인이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무수한 아동 관련 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선고 판사는 그가 이전에 좋은 인물이었다는 것에 비중을 거의 두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 개인과 관련된 범죄들에서 동일한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 한 명당 선고가 이어졌고, 판사는 총 2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

p. 82

|  |
| --- |
| **성적 착취**  폴란드에서 출발한 피고는 영국으로 여행 와서 매춘이 포함된 여행을 계획하고 그에 자금을 댔다. 그는 잉글랜드에서 일곱 개의 매춘 업소를 운영하고 온라인 성인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여성들의 서비스를 광고했다. 그에게 내려진 구금형에 더하여, 판사는 피고에게 최초의 노예 및 밀거래 방지명령을 내렸다. 명령의 조항에 따라, 피고는 여행이 제한되고 누구를 위해서든 교통 및 숙박을 준비할 수 없으며 타인의 신분이 나와 있는 서류를 소지할 수 없고, 피해자 16인 가운데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으며, 한 대의 휴대전화도 소지할 수 없고 성 산업에 관련된 사람과 함께 거주하거나 차로 여행할 수 없고, 인터넷 성인 사이트의 계정을 운영할 수 없으며 그가 영국에 살게 되면 언제나 경찰에게 그의 이름과 주소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p. 88-90

**포르노그라피와 음란물**

2015-16년 동안 기소에 들어간 아동 학대 이미지 범죄가 965건이나 증가했다. 2014-15년에는 21,580건이었지만 2015-16년에는 4.5% 증가하여 22,545건이었다. 모든 관련 부서에서 발생한 기소 건수는 증가하였거나 비교적 꾸준하게 남아 있다. 여기에는 사진을 통한 아동 성적 착취에 대해 시작된 고소 16,672건이 포함되며 아동의 음란 사진을 소유한 것과 관련된 기소 건수는 428건(8.9%)이 증가하여 5,248건의 기소가 시작되었다.

피고 혹은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범죄 자료는 현재 이용할 수 없다. 아래는 아동 학대 이미지 범죄에 대한 공공기소국의 데이터 개요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2015-16 |
| 1988년 형사정책법 (160) – 아동의 음란 사진 소유 | 4,117 | 4,543 | 3,885 | 3,849 | 4,265 | 4,820 | 5,248 |
| 2009년 검시관정책법 (62) – 아동의 금지된 사진 소유 | 0 | 21 | 179 | 394 | 534 | 631 | 625 |
| **다음에 적용되는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  |  |  |  |  |  |  |
| * 1978년 아동 보호법 (1(1)(a)) – 아동의 음란 사진 제작 | 13,652 | 15,768 | 14,570 | 13,596 | 14,443 | 14,518 | 14,930 |
| * 1978년 아동 보호법 (1(1)(b)) – 아동의 음란 사진 유포 | 804 | 670 | 695 | 803 | 907 | 1,318 | 1,422 |
| * 1978년 아동 보호법 (1(1)©)- 아동의 음란 사진을 보여주는 것 | 137 | 410 | 333 | 294 | 224 | 292 | 319 |
| * 1978년 아동 보호법 (1(1)(d)) – 광고인이 아동의 음란 사진을 유포하거나 보여준다는 듯한 광고를 게시하는 것 | 2 | 3 | 1 | 1 | 0 | 1 | 1 |

2015-16년 동안, 여러 법에 따라[[1]](#footnote-1) 포르노그라피와 여타 범죄가 고소당했으며 치안 판사 법원에서 최소한 한 번의 공판이 행해졌다. 공공기소국의 기록을 통해 개인 범죄와 관련하여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건 수를 확인할 수 있으나 포르노그라피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는 없다.

아래의 표(13)는 공공기소국 자료 가운데 음란죄에 해당하는 것들의 개요이다. [[2]](#footnote-2) 2014-15년 5,782건이 음란죄로 기소되었지만 2015-16년에는 20% 증가하여 6,940건이 기소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술과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인해 커뮤니케이션법 127조와 1988년 악의적 커뮤니케이션법 1조 하에서 더 많은 범죄가 기소되었다. 음란물 발행법 하에서 기소된 사건들은 그것 보다 적다. 127조 하에서, 2015-16년 극도로 모욕적이고 음란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기소는 2,026건으로 20.6% 증가했고 이와 더불어 방해, 불편, 타인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한 것과 관계된 기소는 1.9% 하락하여 848건이었다. 커뮤니케이션법 127조 하의 총 범죄 횟수는 13% 증가했고 1988년 악의적 커뮤니케이션법 1조 하의 횟수는 32% 증가했다.

2009년 1월 도입된 새로운 조항들에 따라, 지난 몇 년간 극도로 포르노그라피적인 이미지와 관련된 기소가 증가하여 2015-16년에는 1,737건에 달했다.

**<표13 – 음란죄, 2009-10에서 2015-16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9-10 | 2010-11 | 2011-12 | 2012-13 | 2013-14 | 2014-15 | 2015-16 |
| 1988년 악의적 커뮤니케이션법 조항 (1(1)(a)&(1)(b)) –  음란하거나 극도로 모욕적인 소재 | 899 | 1,273 | 1,301 | 1,250 | 1,210 | 1,586 | 2,094 |
| 1959년 음란물 발행법 (2(1)) – 음란물 발행 | 82 | 71 | 76 | 34 | 33 | 88 | 26 |
|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127(1)(a), (1)(b)&(3))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음란한 커뮤니케이션 | 1,315 | 1,869 | 1,924 | 1,909 | 1,190 | 1,680 | 2,026 |
|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127 (2)(a), (2)(b), (2)(c)와 (3)) – 방해, 불편, 타인에게 불편함 초래 | 888 | 1,037 | 1,181 | 1,003 | 936 | 864 | 848 |
| 2008년 형사정책법 및 이민법 (63(1), (7)(d)와 67(3)) – 극도로 포르노그라피적인 이미지 소유 | 270 | 1,165 | 1,319 | 1,312 | 1,395 | 1,564 | 1,737 |
| 2008년 형사정책법 및 이민법 (63(1), (7A)) – 강간/삽입에 의한 폭행이 나오는 극도로 포르노그라피적인 이미지 소유 |  |  |  |  |  |  | 3 |
| 2015년 형사정책 및 법원법 {33(1)과 (9)} – 고통을 초래할 목적으로 개인의 성적 사진과 영상 공개 |  |  |  |  |  |  | 206 |

p. 90

**합의 없이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

2015년 4월 13일부터 2015년 형사정책 및 법원법의 세부 조항 33-35의 부칙 8에 따라 사진 혹은 영상에 등장하는 개인의 합의 없이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로 개인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신종 범죄로 등록했다.

보통 이러한 사건에는 피해자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은밀한 성적 이미지를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헤어진 성인 파트너가 포함된다. 소위 ‘리벤지 포르노그라피’를 포함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이처럼 신종 범죄를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소셜 미디어 지침에 따라 다루어진다. 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형량은 징역 2년이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자 개인의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시작된 기소 건수는 2015-16년에 206건 발생했다.

|  |
| --- |
| * 페이스북을 통해 한 여성의 가족에게 그녀의 개인적인 사진을 보내고 더 많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다고 협박한 피고가 본인이 합의 없이 개인의 성적 이미지를 공개했다는 범죄를 인정한 후, 그에게 12주의 구금과 18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또 다른 피고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사진들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피해자는 사진이 찍혔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았다. 그는 12개월의 사회봉사 명령, 110파운드 벌금을 받고 재판비 292파운드를 지불할 것과 무기한의 접근금지명령을 선고 받았다. * 또 다른 피고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사진을 그녀의 친구에게 전송했다. 해당 피고(남자)는 18주의 집행 유예와 감시가 따르는 귀가 시간 제한을 받고 비용 지불 및 보상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 * 한 여성의 남자 형제에게 그녀의 사진들을 보낸 후, 그 피고는 12주 징역과 3년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 또 다른 피고는 한 슈퍼마켓 안팎에서 한 여성의 개인적인 사진을 배포했다. 그는 24주간 구금형을 선고 받았고 1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접근 금지 명령, 비용 청구를 받게 되었다. |

p. 91

**강간 포르노그라피**

2015년 형사정책 및 법원법 37조는 2008년 형사정책 및 이민법 63조의 극도로 포르노그라피적 이미지에 대한 소유죄를 2015년 4월 13일부터 수정했다. 따라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삽입과 강간이 묘사된 극도로 포르노그라피적인 이미지를 소유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2015-16년 강간/삽입에 의한 폭행을 담은 극도로 포르노그라피적인 이미지를 소유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시작된 기소는 세 건이었다.

|  |
| --- |
| **강간 포르노그라피 기소**  한 피고의 이전 파트너가 그 피고의 컴퓨터에서 극단적으로 포르노그라피적이고 성적인 아동의 이미지들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의 성적인 사진과 비디오가 100개 넘게 발견되었고 소수의 극도로 포르노그라피적 이미지를 발견했다. 그 중에는 강간을 표현한 이미지들도 있었다. 그는 유죄를 인정했고 3년 동안 지속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으며 성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요구 받았다. 또한 법원은 그에게 5년간 성적 위해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

pp. 91-92

2015년 중죄법 69조는 2015년 5월 3일부터 소아성애에 대한 글(manual), 즉 그루밍을 포함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대한 조언이나 지침을 포함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소지할 경우 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2015-16년에는 한 건의 사건만이 기소에 착수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공기소국은 성인과 아동 사이에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범죄화하는 입법을 도입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아동과의 성적 대화’ 범죄는 2015년 3월 3일 국왕의 재가를 받았으나 본 보고서가 발행될 때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16년 4월 1일부터 공공기소국, 경찰, 사법부 모두 온라인 이미지 가해자 가운데 선별하여 고소하는 것에 새로운 접근법을 국가적으로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접근은 아동 학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Child Abuse Image Database, CAID)를 이용하여 피해가 적은 사건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범죄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기소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동의 성적 이미지에 관한 수정된 공공기소국의 지침은 2016년 7월 발행된다.

p. 92

|  |
| --- |
|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착취**  한 경찰관이 3년에 걸쳐 7명의 가정 폭력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아 그들의 취약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 그는 성적인 이미지와 사진을 전송했으며 세 명의 피해자와 성행위를 했다. 한 피해자는 13개월 동안 9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받았다. 가해자는 4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 |

1. 1978년 아동 보호법; 1959년 음란물 발행법; 1988년 악의적 커뮤니케이션법; 1988년 형사정책법; 1981년 공공 음란물 전시법(통제); 2008년 형사정책 및 이민법; 2009년 검시관정책법;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footnote-ref-1)
2. 1959년과 1964년의 음란물 발행법(Obscene Publications Acts, OPA)을 통해 음란물의 발행에 대한 법이 정립되었다. 음란에 대한 정의는 1959년의 음란물 발행법 1조 1항에 나와 있다. 해당 범죄는 1959년 음란물 발행법 2조에서 등장하며, 최대 5년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출판물은 1959년 음란물 발행법의 대상이 된다. 이 법 아래에서, 음란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기사라도 그것을 발행한다면 범죄가 된다. 즉, 법정에서 보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누군가가 보고, 듣거나 혹은 읽는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2008년의 형사정책법 및 이민법 세부 항목 63에서 67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누군가의 항문, 가슴, 생식기에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 수간, 시간을 범죄라고 규정한다. 또한 등급이 매겨진 영화에 대한 예외 규정도 존재하며, 범죄에 대한 변론과 형벌도 나와 있다. 해당 범죄는 2009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었다. [↑](#footnote-ref-2)